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등의
설치·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운영 규정상의 미비점 보완 및 유사법령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위원에 안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안 제2조)
- 나. 위촉위원의 1회 연임을 규정(안 제3조)
- 다.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4조)
- 라. 지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사항 규정(안 제5조~6조)
- 마. 세종특별자치시 실무위원회 위원의 수를 22명에서 25명으로 확대(안 제7조)
- 바. 지원위원회 실무지원단을 유사조직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없 음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 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무지원단”으로 한다.

4. 지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해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지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지원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除斥事由)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종전의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를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5조) 제2항 본문 중 “3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제2조제2항제4호의 위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22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법제처 차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해당 기관에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촉위원”은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

제10조(중전의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9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의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종 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 며, 간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u>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의 단장</u> 이 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2 <u>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u> <u>기는 2년으로 한다.</u> ②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 <u>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u>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지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u> <u>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u> <u>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u> <u>의 장</u> ③ ----- ----- 제10조제2항에 따른 <u>실무지원단</u> ----- -----.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2 <u>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u> <u>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u> <u>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u> <u>연임할 수 있다.</u> ② <u>위촉위원</u> ----- ----- -----

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설>

<신 설>

-----.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
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는 그 직에서 해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
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① 지원위원회의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
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지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
동의무자인 경우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
족이었던 경우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
구,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하
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지원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
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
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
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
이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
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
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신 설>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除斥事由)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

	<u>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u> <u>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u>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u>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u> ② ----- ----- ----- <u>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u> ----- --.
<u>제5조(회의) ① (생략)</u>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u>3일</u>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u>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u>	<u>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u> ② ----- ----- ----- <u>7일</u> ----- ----- -----. ③ ----- <u>재적위원(제2조제2항제4호의 위원을</u>

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포함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기

포함한다) -----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25명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법제처 차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해당 기관에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

2. ~ 4. (생략)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각각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제7조(실무지원단)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으로 국무조정실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2. ~ 4. (현행과 같음)

④ 실무위원회 위원 임기,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촉위원”은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

제10조(실무지원단)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u>제8조</u> ~ <u>제12조</u>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제11조</u> ~ <u>제15조</u> (현행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071